

영등포구의회  
제157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0. 12. 3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9호로 201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이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 신설(안 제16조의2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
및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-255(2010. 9. 1),  
서울시 행정과-20684(2010. 9. 1)호

나. 예산조치 : 2011년 예산안 반영 요구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 하는 경우 각 동의 통·반장 등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고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6조의2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
- 행정안전부에서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적 자문결과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검토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따른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 관 계 법 령

## ■ 도로명주소법

제18조(도로명주소의 고지 등)① 시장등은 도로명(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부여,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,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.

## 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

제23조(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의 고지·고시 절차)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·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(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)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.

1.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·군·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
2.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

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

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·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·변경 사실이 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)·읍장·면장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등은 주민등록의 변경요청을 한 사실을 해당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도로명주소의 부여·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·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·고시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의 고지·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##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(실비변상) 검토

### □ 검토배경

-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

### □ 주요내용

- 시장 등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신설)
  - 시·군·구의 「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(붙임 참조)

### □ 행정사항

- 각 자치구에서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「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'11.1.30까지 통보

### <참고자료>

1.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(붙임)
2. 조례개정안 정부법무공단 검토의견(따로 붙임)

<붙임>

##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안

(방문고지 실비변상 관련)

○ 고지·고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(예시1)

현 행	개정안
제 조(도로명주소의 고지·고시) ①~ ③ (생략) ④ <신설>	제 조(도로명주소의 고지·고시) ①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은 제 항에 따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

○ 고지·고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(예시2)

현 행	개정안
제 조(실비변상) <신설>	제 조(실비변상) <u>시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